

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과태료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1. 공고사유: 과태료 납부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: 2024. 11. 19. ~ 2024. 12. 2. (14일간)

※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

3. 공시송달 대상자

고지번호	성명	세 목	부과근거	체납액	생년월일	주소(일부기재)
0112240258360000115	정*환	과태료	수상레저안전법	103,000	850624 -1*****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아랫소포길 43-11

4. 공고내용

본 공고대상자는 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, 여수해양경찰서 채권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 및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: 수협 2010-0906-3601(여수해양경찰서)

5. 문의처: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, 여수해양경찰서

기획운영과(경리계) 061-840-2217, Fax: 061-840-2917

2024. 11. 19.

여수해양경찰서

